

제 호

과정 지정서

신청인 (설치자)	1. 기관명(과정명)
	2. 설치자 성명
	3. 위치(기관 주소)

지정 내용

개설 교과목	면제 과목		
	교양과정	전공기초과정	전공심화과정

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장 인

유의사항

과정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.